

「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4월 08일, 박찬원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1년 04월 1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04월 1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찬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
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경우회 지원사업 범위(안 제3조)
- 나. 경우회 지원신청 및 결정(안 제4조)
- 다. 보조금관련 준용사항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
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

본칙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3조에서는 경우회 지원 사업 범위

안 제4조에서는 사업 신청 및 결정

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관련 준용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“재향경우회”는

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
기여함을 목적으로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.

그 조직은 중앙회, 시·도회, 지역회를 두며

사업으로는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, 치안 협력 및 지원,
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, 이를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
있는 비영리 법인으로

평창 경우회는 50여명 구성의 지역회로, 평창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으며
학교 주변 및 우범 지역 순찰, 각종 행사 교통정리 등을 주요활동으로
하고 있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

2020년 3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는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

있다”가 신설되어, 재향경우에 대한 지방 보조금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기에, 조례에 지원 사업 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.

- 강원도 내 입법례는 동해, 영월, 정선, 횡성, 속초, 고성, 강릉 7곳이며 재향경우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유지 협력 및 공익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. 다만, 보조사업 결정 시 타 단체 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, 효과성 등과 관련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 및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경우회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평창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범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원신청 및 결정)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, 타당성,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5조(준용)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지도·감독,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

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